

자료



- 호흡용 보호구를 포함한 마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ph.lacounty.gov/masks>를 방문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주 직업 보건 안전 관리국(Cal/OSHA) 규정에 대한 자세한 장보는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ETS.html>를 방문하십시오.
- 유급 휴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dir.ca.gov/dlse/COVID19Resources/2022-SPSL-FAQs.html>를 방문하십시오.
- COVID-19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https://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workers.htm를 방문하십시오.
- 귀하가 받을 자격이 되는 추가 고용주 및 정부 지원 휴가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saferatwork.la/employees>를 방문하십시오.
- Cal/OSHA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dir.ca.gov/covid/workplace-issues.html>를 방문하십시오.

중증 질환 고위험군 근로자를 위한 조언



COVID-19 백신 접종이 최신 상태가 아닌 사람, 기저 질환자,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 또는 고령자인 경우, COVID-19에 **감염되면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조치를 실천하십시오.

1. 고용주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요청하십시오. 실내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과 있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차량 공유를 할 때 항상 착용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두기를 할 수 없으면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고려해 보십시오. 호흡용 보호구 착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중 마스크**"(의료용 마스크 위에 얼굴에 편안히 맞는 천 마스크 착용)를 착용해 보십시오.
2. 근무 여건이 되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6피트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3. 휴식 시간에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는 야외에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하십시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실내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열어 두십시오.
4.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어도 안전하다면 근무지에서 창문이나 문을 열어 두십시오. 신선한 공기는 공기 중의 비말량을 줄이고 COVID-19에 감염될 위험성도 줄여줍니다.
5. COVID-19에 감염되면 입원 치료를 받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COVID-19 의약품을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증상이 발현되고 최대한 빨리, 치료제에 따라 5일-7일 이내로 복용하기 시작해야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거나 (833) 540-0473으로 전화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ph.lacounty.gov/covidmedicines를 방문하십시오.

근로자의 권리 안내책자의 내용은 아래에 볼 수 있습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business/Workers_Rights_Pamphlet.pdf



COVID-19 안전의식: 캘리포니아 주 근로자의 권리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www.publichealth.lacounty.gov



COUNTY OF LOS ANGELES
Public Health

COVID-19 안전의식: 캘리포니아주 근로자의 권리



Cal/OSHA에 따르면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가 COVID-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알고 위반 사항은 다음을 통해 보고하십시오:

- 귀하의 노조 대표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 Cal/OSHA에 불만사항을 제기하려면 833-579-0927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공중 보건국에 불만사항을 제기하려면 888-700-7995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



- 귀하의 고용주는 직장에서 COVID-19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한 계획을 반드시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주정부의 [Cal/OSHA 규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COVID-19 예방 계획 및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 장비 (또는 "PPE")



- 모든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근무 또는 공유 차량에 탑승하는 동안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장하는 목적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예: 백신 미접종자, 고령자, 기저 질환자, 면역력 저하자) 및 노출이 장기간 누적된 사람 (예: 근로자)을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실내 또는 한 사람 이상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야 하는 경우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얼굴에 편안하게 맞는 의료용 마스크 및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착용 여부는 귀하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N95 (NIOSH-인증) 호흡용 보호구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귀하에게 맞는 크기의 호흡용 보호구와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기본 지침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어도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의 고용주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얼굴에 편안하게 맞는 의료용 마스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모든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 마스크 및 호흡용 보호구의 비용을 직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마스크 또는 호흡용 보호구를 무료로 제공 및 교체해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가 직장에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에 보복할 수 없습니다.
- 모든 마스크가 일정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만, 얼굴에 편안히 맞는 호흡용 보호구, 특히 N95가 더 나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 호흡용 보호구가 변형 또는 손상되거나 더러워지거나 숨쉬기 어려운 경우 교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번 교대 근무를 시작할 때 호흡용 보호구를 교체해야 합니다. [CDC 권장사항](#)에 따르면 호흡용 보호구를 5번 쓰고 벗은 후에 교체해야 합니다.

손 씻기는 시기 및 세정용품



- 고용주는 비누와 물 및/또는 손 소독제가 구비된 손 세척 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작업장 및 탑승해야 하는 모든 차량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무 시간에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COVID-19 검사



- 고용주는 근무 시간에 다음 상황에 처한 모든 직원에게 무료 검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
 - 근무 시간에 COVID-19에 노출된 직원, 지난 90일 이내에 COVID-19에서 회복한 사람 및 증상이 없는 사람은 제외함
 - 격리 또는 고립 중인 직원이 계속 근무하거나 직장에 빨리 복귀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5일 차 및 그 이후)
- 고용주, 지역 보건국, 연방 정부, 건강 보험 또는 지역사회 검사소에서 검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



- 귀하가 근무하는 동안 COVID-19에 노출되었거나 COVID-19에 감염되어 집에 머무르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고용주는 귀하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지급이라고도 알려짐).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동안에도 정규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 COVID-19에 노출되지 않았어도 COVID-19 지원 유급 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 대상자는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관련 증상이 호전하기 위해 또는 COVID-19에 감염 또는 격리를 해야 하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유급 휴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COVID-19 지원 유급 휴가 [포스터](#)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직장에서 COVID-19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귀하의 노조 대표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 Cal/OSHA에 불만사항을 제기하려면 833-579-0927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공중 보건국에 불만사항을 제기하려면 888-700-7995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